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6950호 2025년 7월 14일(월)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0호)9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1호)	17
○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2호)	20
○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3호)	23
○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4호)	26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5호)	30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6호)	34
○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7호)	39
○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8호)	43
○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9호)	48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0호)	52
○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1호)	55
○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2호)	59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3호)	72

○ 경상북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4호)	75
○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5호)	76
○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6호)	81
○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7호)	84
○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8호)	88
○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299호)	90
○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0호)	93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1호)	96
○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2호)	98
○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3호)	101
○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4호)	102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5호)	104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6호)	107

○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7호)	108
○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8호)	111
○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09호)	114
○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10호)	117
○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11호)	121
○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12호)	123
○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13호)	127
○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14호)	132
○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15호)	136
○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16호)	139
○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17호)	142
○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18호)	145

■ 고 시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3호) 150
- 사망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4호) 152
- 양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5호) 157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6호) 159
- 금오산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7호) 161

■ 공 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62호) 178
-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63호) 180
-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65호) 182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75호) 18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78호) 189

시 군

■ 고 시

- 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구미대학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5-179호) 191
- 영주 도시계획시설(공원:구성공원) 실시계획 실효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5-103호) 193
- 영주시 도시계획시설(공원:구성공원)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5-104호) 198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5-124호) 203
- 도시계획시설[도로:점촌4동 임촌 도시계획도로(소로3-355)개설공사]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5-125호) 207
- 문경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5-126호) 210
- 청송군계획시설(도로:소로2-성1호선,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송전선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재고시
(청송군 고시 제2025-75호) 213

■ 공 고

-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 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5-1615호) 224

기 타

■ 규 칙

-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874호) 239

■ 고 시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3호) 244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4호) 245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5호) 246
-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6호) 247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7호) 249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90호) 250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91호) 252



경 상 북 도

조 례

경상북도 조례 제5280호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심을 높이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농교육교류협력”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가 농어업교육 내실화, 농어촌체험 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협력대상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교직원 및 학생 교류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교류협력대상”은 농어촌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 및 농어업교육 관련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등을 말한다.
4. “교육지원”이란 농어촌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류협력대상과 그에 속한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매결연”이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가 농어업 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6. “농어업교육”은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외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교양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전개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이 가진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한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도농교육교류협력 현황
3.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및 지원내용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류협력대상의 선정) ① 교육감과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이 농어촌의 교류협력대상과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행·재정 수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의 교류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등

제7조(도농교육교류협력의 내실화) ①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된 도농교류의 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농업인의 날에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및 농어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조사·연구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고 농어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및 전문가 자문, 교원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도농교육교류협력 운영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도농교육교류협력의 취소·중단) 교육감과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등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해당 교류협력대상과의 관계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

였을 경우

2. 해당 교류협력대상과의 실제적인 교류두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력계획 추진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도농교육교류협력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농교육교류협력 추진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도농교육교류협력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농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농어업교육 또는

생태·환경교육, 도농교육교류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임직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도농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하여 교육청 도농교육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육교류센터는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홍보, 행사 개발 및 지원
2. 농어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3.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어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4. 농어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농어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농어업교육 내실화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7. 그 밖에 농어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어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과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농어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류협력대상,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선도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농어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진흥을 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선도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농어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및 농어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81호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족 학생 부모의 모국어인 외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

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중언어 교육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중언어 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2.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3.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직원)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연수) 교육감은 이중언어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중언어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교육감은 효율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82호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통행로를 말한다.

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학부모·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2에 따라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의 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구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팎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 구역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각급 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 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83호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①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2. 경상북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협조

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과 연계한 폐현수막 재활용 교육의 실시

②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 진행 시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84호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

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각급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식관리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추는 것

2.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확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시 급식실의 위치
2. 급식실의 신축·이전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 방안
4. 그 밖에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건강관리 지원)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활용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휴게시설)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85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정체성 보존 및 품격 있는 학교 상징물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해당 학교의 역사성과 고유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이상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의 상징적 가치와 품격을 유지하며, 학교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역사성, 고유성, 공동체성의 반영 여부
2.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혐오·차별적 요소 포함 여부
3.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사성 여부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1. 공식 문서, 간행물, 상장 등 교육·행정 목적

2.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홍보물 제작

3. 기념품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공공질서 또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반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색상 등 본래의 핵심 디자인 요소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적 선전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 교육활동, 공익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학교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절차 및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식재산권 등록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이하 “등록 상징물”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기간, 사용료 및 납부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② 학교장은 같은 법 제24조, 제34조 및 제43조의8에 따라 등록 상징물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등록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86호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을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제도, 사업 및 시책을 말한다. 다만, 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정책은 제외한다.
2. “정책 관리”란 정책의 기획, 분석, 평가, 정비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정책 평가”란 정의 효과성, 효율성, 수요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정책 정비”란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폐지, 개편, 통합,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절차적 조치를 말한다.
5. “경미한 정책”이란 예산 투입이 없거나 시행 기간이 단기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부응하여 정책 관리가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적용한다.

제5조(정책 평가) ① 교육감은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 평가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책 정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책의 전면 폐지

2. 정책의 구조적 개편 또는 유사 정책과의 통합
3. 정책의 내용 개선 또는 대상 조정
4. 정책의 유지

제7조(정책 폐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은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1. 정책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지속 추진의 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현저히 미미한 경우
3. 민원 또는 부정적 여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경우
4.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5.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교육감은 정책 관리 기준의 수립, 정책 평가 결과의 검토 및 정책 정비 방향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 관련 외부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회 해촉,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미한 정책의 자체 처리) 경미한 정책은 주관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체 정비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조치한 정비 결과를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사후 관리) 교육감은 폐지된 정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87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마. 「사립학교법」 제53조·제53조의2에 따른 교원 및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

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저항력 및 회복력을 갖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심리검사, 전문 심리상담, 의료적 치료 연계 등 마음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망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태 스크리닝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희망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3.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보장) ① 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에서 교직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직원의 상담 일지 및 내용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88호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 증진 및 양육 태도 점검 및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
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교육 및 학교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교육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② 학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교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교육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학부모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교육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학부모교육 강사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부모교육 내용)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2.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3. 학부모 심리상담을 통한 양육 태도 점검 및 양육 스트레스 교육
4.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뢰와 존중에 관한 교육
5.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 교육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제9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관련 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본다.

경상북도 조례 제5289호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솔교사”를 “인솔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솔자”는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5. “인솔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6.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을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인솔 및 지도 교사”를 “인솔자”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조인력의 배치)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2.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u>인솔교사</u> 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 ----- <u>인솔자</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인솔자”는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u>〈신설〉</u>	5. “인솔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u>〈신설〉</u>	6.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을 말한다.
4.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8.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다.
제8조(안전교육) ① (생략)	제8조(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은 <u>인솔 및 지도 교사</u> 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② ----- <u>인솔자</u> ----- -----

현행	개정안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보조인력의 배치)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1조 (생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경상북도 조례 제5290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산북초등학교창구분교장병설유치원, 단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장, 산북초등학교창구분교장, 단밀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나지역>의 “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장”, “산북초등학교창구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u>산북초등학교창구분교</u> <u>장병설유치원</u>	<u>문경시 산북면</u> <u>창구길 9</u>	〈삭_____제〉	
<u>단밀초등학교병설유치원</u>	<u>의성군 단밀면</u> <u>중동단밀로 939</u>	〈삭_____제〉	
<u>용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u>	<u>성주군 용암면</u> <u>상언1길 27-5</u>	〈삭_____제〉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u>월곡초등학교삼계분</u> <u>교장</u>	<u>안동시 예안면</u> <u>농암로 2384</u>	〈삭_____제〉	
<u>산북초등학교창구분</u> <u>교장</u>	<u>문경시 산북면</u> <u>창구길 9</u>	〈삭_____제〉	
<u>단밀초등학교</u>	<u>의성군 단밀면</u> <u>중동단밀로 939</u>	〈삭_____제〉	
<u>용암초등학교</u>	<u>성주군 용암면</u> <u>상언1길 27-5</u>	〈삭_____제〉	

경상북도 조례 제5291호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보화책임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② (생략)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교육감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 ----- -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9. ----- 지능정보화책임관-----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 ----- -----.

현행	개정안
제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 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u>정보화책임관</u>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 ----- ----- ----- <u>지능</u> <u>정보화책임관</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조례 제5292호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의회의장

2. 의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

③ 제2항 각 호의 직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 (이하 “특수직인”이라 한다)을 구분·제작하여 사용한다.

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및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게 공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총무담당관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공인의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제7조(찍는 위치) ① 청인은 기관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들어 총무담당관에게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관리자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무담당관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총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한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이 있는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인(전자 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경상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인영의 보존) 총무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려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수량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문서생산담당 직원이 현장에 입회·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한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cm)

구분	길이
경상북도의회인	3.6
경상북도의회의장인	3.0
경상북도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	2.7
경상북도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2.7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인	2.7

비고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서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 인 [] 특수직인
(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		
사용 예정일		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기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방법	[] 이 관 [] 기 타
	폐기자 (분실자)	직급 : 소속 : 성명 :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직인		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 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방 법	☐ 분실 ☐ 기타()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직인			
☐ 등록 · ☐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사용기관	시스템명	통 보 일	최초사용일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사용기관			시스템명	통 보 일	최종사용일

※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폐 인 대 장

공인명	신조 연월일	사용개시 연월일	규격	서체	폐인		폐인의 인영
					연월일	사유	

[별지 제5호서식]

인 영 부

기관명

(년 2월 1일 현재)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공인명	공인의 인영

[별지 제7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고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인)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 귀하

경상북도 조례 제5293호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을 “영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공무원은 본인 및 공무원인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1일의 가족이동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영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4의 제2호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중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입양 관련 부분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1. 결 혼	가. 본인	5일
	나. 자녀	1일
2. 출 산	가.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
3. 입 양	가. 본인	20일
4. 사 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비고 :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상북도 조례 제5294호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상북도의회”를 “경상북도의회(이하“의
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95호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를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4.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96호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경상북도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 시설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홍보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97호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개발, 창업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책연구·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지원
5.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7.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 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 수행주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298호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를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경상북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직무발명을 보호
· 장려하기 위함”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을 “직무발명을 완성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결정해야 하며, 통지”를 “결정하고, 도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로, “문서”를 “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4항”을 “법 제13조제1항 본문”으로, “양도받은”을 “도승계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을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된 직무발명의 발명자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 조례 제5299호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를 위하여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거나 경상북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0호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나.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유포·유포협박·소지·시청·구입·저장·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

다. 영리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

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대여·유포·소지·구입·광고하는 등의 행위

마.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바. 그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 지원”을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을 “예방교육 및 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여성 등 경상북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피해 지원”을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지원”을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한다.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1호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2항”을 “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투자·출자·출연기관”을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법 제7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목표 비율”을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 비율”로, “구매액으로 하되”를 “구매액을 말하되”로,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를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개별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달리”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평가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 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2호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공무원은 본인 또는 공무원인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1일의 가족이동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의 제2호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중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 중 입양 관련 부분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1. 결 혼	가. 본인	5일
	나. 자녀	1일
2. 출 산	가.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
3. 입 양	가. 본인	20일
4. 사 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 부모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 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비고 :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
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3호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4호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미취업 졸업생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셋”을 “둘”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재단”을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단”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가구소득분위”를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5호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이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교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
다.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이전
후 시설의 최초 사용일 부터 적용한다.

[별표]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생 활 관	1인실	1인 1박	20,000원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대 강 당	293석	4시간	100,000원	"
대강의실(2실)	187석(화랑실)	4시간	50,000원	"
	122석(선비실)			
중강의실(2실)	76석(새마을실)	4시간	30,000원	"
	76석(호국실)			
소강의실(6실)	56석(3실)	4시간	20,000원	"
	40석(3실)			
전산강의실(2실)	65석(1실)	4시간	50,000원	"
	55석(1실)			
분임토의실(11실)	15석	4시간	10,000원	"
체육시설	운동장	4시간	30,000원	"

1.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 할 때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6호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7호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웹툰의 창작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내 만화·웹툰의 창작과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만화·웹툰산업의 기본방향
2. 만화·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협력방안
3. 만화·웹툰의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방안
4. 만화·웹툰산업 관련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 창작을 위한 기반조성
2. 만화·웹툰산업 및 관련 융복합 콘텐츠 창작·제작 지원
3. 만화·웹툰산업 관련 취·창업 지원
4. 만화·웹툰산업 관련 실태조사
5. 만화·웹툰산업 관련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6. 만화·웹툰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
8.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8호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시·군 관광자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상북도 내 둘 이상의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역연계관광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
 2. 지역연계관광자원 발굴
 3. 지역연계관광 콘텐츠 개발
 4. 지역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지역연계관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군 담당 공무원
3.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경상북도민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09호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방제, 처리 등의 관리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방제 등의 기술개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10호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상북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영상시설”이란 영상 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제작 및 촬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화·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영상산업의 목표와 방향
2. 영화·영상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상시설 등 제작기반 확충방안
5. 영화·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화·영상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7. 도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현지 촬영 장소 제공·홍보·발굴·데이터베이스 구축

2. 영상시설 조성 및 개선 지원

3. 영상물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

4. 영화·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5. 장애·고령·다문화가족 등의 사유로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6. 영화제 등을 통한 우수 영화·영상 발굴

7.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유관기관,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시·군, 영화·영상 제작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경상북도 조례 제5311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 라”를 ““도”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
6.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관한 사항
8.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9.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7.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24조에 관한 사항

10.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11.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업무”를
“기후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유통업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직기간”을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9조 중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12호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의 건강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선의 소유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도 선적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
2.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원
3. 해난 사고의 수색·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
4.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 시 사전에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어선원들의 작업환경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
3.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4. 어선원들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
5. 어선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
6. 그 밖에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계획과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경우,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가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하여야 한다.

④ 어선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지사는 어선원에게 지원된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 시군·해양경찰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13호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수산인이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개선방안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 앱 등) 개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과 컨설팅
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 및 운송 관련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농수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수산물을 구매 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수산물 우선 구매 및 온라인 플랫폼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농수산물 품질 향상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유통·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14호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법 제7조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규상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촉진에 관한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이소 등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연구·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융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상환조건 등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 시 효율적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조례 제5315호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혁신도시(이하 “혁
신도시”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센터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에 둔다.

② 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공유 오피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내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5. 공유 오피스 임대 사업
6.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 오피스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의 시설 중 회의실, 강당에 대한 사용 허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한다.

제6조(사용의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설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관리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16호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소방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단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경상북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17호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소방출동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재난대응훈련 실시
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긴급차량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18호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조성된 농공단지
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인력 확보 및 정주환경 조성·개선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희공간 실태조사와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내 근로자 주거 및 편의시설 등의 확충 사업
2.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지원 사업
3. 농공단지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4.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
5.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교육·세미나·컨설팅 사업
6. 농공단지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회의의 설치)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경상북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 설치·운영) ① 협의회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
2. 인력·자금·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 등 행사 개최
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절차 등) 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3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청도읍 중리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사업목적)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지원

2. (사업내용 및 구역)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 업 개 요	사 업 시행자
	시군	읍면			
중리 지구	청도	청도	43	○ 암반관정 150m³/일, 6개소 ○ 저수조 100ton/개소, 6개소 ○ 송수관로(D=50mm) 6조, L=1,557m ○ 급수관로(D=90~63mm) 8조, L=3,461m ○ 경작농로(B=3.0~1.0m) 3조, L=200m	청도 군수

3. (사업비) 2,022,500천원(국비 1,618,000, 지방비 404,500)

4. (사업예정기간) 2025. 1. ~ 2025. 12.

5. (사업효과) 저비용 고효율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6. (사업내용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의 세목조서) 사업시행 기관(청도군 친환경농업과 및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에 비치된 사업계획서 및 조서와 같음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4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5년도 사방사업 시행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 054-850-3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도 지방지 지정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사방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합계			28필지		3,314,596	3,131				
청송군			7		153,302	443				
청송	현동	도평	221	임야	195	2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82-37, 120동903호 (반월동, 에스케이뷰파크)	배송원	사방댐	대표 지번
청송	현동	도평	222	하천	86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15-1, B동201호 (합정동, 한올빌라)	윤정기	사방댐	
청송	현동	도평	223	임야	60	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708	우봉이	사방댐	
청송	현동	도평	844	구거	1,603	148		농림부	사방댐	
청송	현동	도평	산93	임야	19,835	13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6-10	정수일	사방댐	
청송	현동	도평	산94-8	임야	130,942	26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거두마을길 193	최정범	사방댐	
청송	현동	도평	226-1	전	581	5			사방댐	
영양군			10		2,512,354	1,585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주 소			
영양	수비	수하	산87-1	임야	1,090,079	171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영음골로 351-7	주천학	사방댐	대표 지번
영양	수비	수하	산92-1	임야	13,224	302			산림청	사방댐	
영양	수비	수하	산92-2	도로	1,156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3길 2-4	(신길동)	장한승	사방댐	
영양	입암	양항	58	전	2,582	280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75번길 65		임남규	사방댐	대표 지번
영양	입암	양항	61	답	1,309	131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5길 21(우정동)		권대희	사방댐	
영양	입암	양항	62	답	238	94				사방댐	
영양	입암	양항	497	구거	61,282	545			농수산부	사방댐	
영양	입암	양항	산93	임야	1,265,058	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3-57		주식회사정원이 디에쓰	사방댐	
영양	입암	양항	산97	임야	76,562	5			영양군	사방댐	
영양	입암	양항	산197	구거	864	4			농수산부	사방댐	
예천군			3		208,429	214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예천	보문	수계	838-11	구거	66,810	147			농림부	사방댐	대표 지번
예천	보문	수계	산116	임야	68,231	6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100, 110동 2605호 (월성동, 월성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윤기완	사방댐	
예천	보문	수계	산117	임야	73,388	6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방점이길 149-1		정우동	사방댐	
예천	보문	수계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4길 1, 3층 (태전동)		정우경	사방댐	
봉화군			8		440,511	889					
봉화	물야	오전	1203	구거	19,055	336			농림축산부	사방댐	대표 지번
봉화	물야	오전	38-1	답	1,316	4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20 101동 604호(파이엔유아파트)		양승진	사방댐	
봉화	물야	오전	산2-1	임야	24,023	4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20 101동604호(파이엔유아파트)		양승진	사방댐	
봉화	재산	갈산	2487	구거	655	6			농림축산식품부	사방댐	대표 지번 (1공구)
봉화	재산	갈산	산625	임야	258,645	25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 53, 702동 406호 (후평동, 주공아파트)		김호년	사방댐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봉화	재산	갈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26길 8, 702호 (상봉동,태슬에버빌)		김광연	사방댐	
봉화	재산	갈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53, 104동 2101호 (장성동, 타워빌 아파트)		김중현	사방댐	
봉화	재산	갈산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54길 9, 101동304호 (구평동, 구평영무예다움)		김중현	사방댐	
봉화	재산	갈산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46, 2003동 1802호 (평내동, 평내마을중흥S클레스)		김석현	사방댐	
봉화	재산	갈산	산626	임야	132,893	6			봉화군	사방댐	
봉화	재산	갈산	산694	구거	780	248			농림축산식품부	사방댐	
봉화	재산	상	554	전	3,144	33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250		권충섭	사방댐	2공구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5호

양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양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구미시 지산동, 양호동, 고아읍 괴평리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2조를 설치하여 홍수 발생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의 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적 영농 도모

2. 사업내용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양호동, 고아읍 괴평리 일원

나. 수혜면적 : 97.4ha

다. 사업개요

- 배수장 : 1개소 증설 (양호2배수장 $Q=9.5\text{m}^3/\text{s}$)

- 배수로 : 2조 0.52km

- 매 립 : 0.93ha

3. 사 업 비 : 11,515,350천원

4. 사업기간 : 2022. 5. ~ 2024. 12. 30.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054-712-3452)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6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임동면 고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사업목적)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지원

2. (사업내용 및 구역)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 업 개 요	사 업 시행자
	시군	읍면			
고천 지구	안동	임동	38	○ 관 정 7.5HP-15.0HP, 6개소 ○ 송수관로 ø50mm 6조, 2,943m ○ 급수관로 ø50~75mm 7조, 3,090m ○ 저 수 조 50ton, 6개소 ○ 농 로 B=4.0(3.0)m 2조, L=102m	안동시장

3. (사업비) 1,787,250천원(국비 1,429,800 도비 107,235 시비 250,215)

4. (사업예정기간) 2025. 1. ~ 2025. 12.

5. (사업효과) 저비용 고효율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6. (사업내용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의 세목조서) 사업시행 기관(안동시 농업정책과 및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 비치된 사업계획서 및 조서와 같음

경상북도 고시 제2025-267호

금오산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금오산도립공원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자연공원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금오산도립공원

2. 공원의 면적 : 37.262km²(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면적(km ²)	비 고
공원구역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37.262	김천시 8.501 구미시 20.815 칠곡군 7.946

3. 용도지구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구계획

구 분	면적(k㎡)	비 고
계	37.262	
공원자연보존지구	5.788	
공원자연환경지구	30.687	
공원문화유산지구	0.004	
공원마을지구	0.783	

나. 공원문화유산지구 계획(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 고
계		3,743	
법성사(구미시)	구미시 남통동 358-2일원	2,331	
선봉선원(칠곡군)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산1435일원	1,412	

다. 공원마을지구 계획(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 고
계		782,789	
고금사주변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816-3일원	36,212	
대성저류지하류마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86일원	12,237	
신기마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506일원	11,780	
못대가리마을	구미시 수점동 16-8일원	21,096	
남통동	구미시 남통동 312-1번지 일원	454,601	(구)집단시설지구
수점동	구미시 수점동 124번지 일원	246,863	(구)집단시설지구

4.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구 분	종류	명 칭	위 치	수량 및 규모	용도지구	관리자	비고
자연 자원	산봉 (4)	금오산 (현월봉)	구미시 남통동	해발 976m	자연보존지구	구미시장	
		약사봉	"	해발 950m	"	"	
		남통봉	"	해발 527m	"	"	
		도수령	"	해발 473m	"	"	
	계곡 (5)	금오계곡	"	-	자연환경지구	구미시장	
		남통계곡	"	-	"	"	
		대혜계곡	"	-	"	"	
		지경계곡	김천시 남면 부상리	-	"	"	
		금오동천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	"	칠곡군수	
	폭포 (1)	대혜폭포	구미시 남통동	H=27m	자연환경지구	구미시장	
	저수지 (2)	금오지	구미시 남통동	277,687㎡	자연환경지구	농촌공사 구미지사	
		대성지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557,358㎡	"	"	
	기타 (1)	대혜담	구미시 남통동	-	"	구미시장	
문화 자원	보물 (2)	대각 국사비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산1	1기(251호)	자연환경지구	자체	
		마애보살 입상	구미시 남통동 산94	1구(490호)	자연보존지구	"	
	사적지 (3)	금오산성	구미시 남통동 산94	L=2.3km H=2.0m	자연보존지구	구미시장	
		채미정	구미시 남통동 산249	4동	집단시설지구	"	
		도선굴	구미시 남통동 산94	L=7.2m H=4.5m	자연보존지구	"	
	사찰 (5)	약사암	구미시 남통동 산33-1	4동	자보존지구	자체	
		해운사	구미시 남통동 산49	3동	자연 환경지구	"	
		대각사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산1	3동	"	"	
		법성사	구미시 남통동 산358	1동	"	"	
		굴암사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산31-1	1동	"	"	

5. 공원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운수시설(변경)

1) 진입도로 계획(변경없음)

시설명	폭원(m)	연장(km)	노선명	비고
계		5.60		
진입도로1	12	1.11	대성지-수점지구	
진입도로2	13	3.00	상가단지-형곡지구	
진입도로3	15	1.20	입구-남통지구	
진입도로4	4	0.15	수점동집단시설지구-대성선 유장	
진입도로5	10	0.14	교원연수원-주차장	

2) 등산로 계획(변경)

시설 번호	노선명		연장(k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9개코스	30개코스	52.70	52.93	
1	삭도지점-현월봉-도수령-효자봉	삭도지점-현월봉-도수령-효자봉	6.6	6.6	노선 변경
2	자연환경연수원-칼다봉-대혜폭포	자연환경연수원-칼다봉-대혜폭포	2.1	2.1	
3	자연학습장-성안	자연학습장-성안	3.4	3.4	
4	금오동천-성안	금오동천-성안	2.5	2.5	
5	호텔-자연학습장	호텔-자연학습장	1.4	1.4	
6	성안-정상	성안-정상	0.7	0.8	증) 0.1
7	대혜폭포-성안	대혜폭포-성안	1.3	1.3	
8	금오교-자연학습장	금오교-자연학습장	1.2	1.2	
9	법성사-정상	법성사-정상	2.7	2.7	

시설 번호	노선명		연장(k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0	마애석불-약사암	마애석불-약사암	0.7	0.7	
11	남통동-효자봉-송오리	남통동-효자봉-송오리	2.5	2.5	
12	법성사-도수령-송오리	법성사-도수령-송오리	2.2	2.2	
13	수점동-자연환경연수원	수점동-자연환경연수원	1.5	1.5	
14	우장마을-성안	우장마을-성안	1.8	1.8	
15	형곡동-대관정-금오지	형곡동-대관정-금오지	1.0	1.0	
16	자연학습장-전망대	자연학습장-전망대	0.3	0.3	
17	남통휴게소-대관정	남통휴게소-대관정	2.15	2.15	
18	등산로11-대각국사비	등산로11-대각국사비	0.25	0.25	
19	형곡동-대관정	형곡동-대관정	1.0	1.0	
20	형곡동-등산로11	형곡동-등산로11	0.7	0.7	
21	취영정-등산로5	취영정-등산로5	0.1	0.1	
22	갈항마을-등산로4	갈항마을-등산로4	2.95	2.95	
23	상모동-등산로11	상모동-등산로11	3.0	3.0	
24	금융사-효자봉	금융사-효자봉	2.0	2.0	
25	형곡동-등산로24	형곡동-등산로24	1.1	1.1	
26	북삼고등학교-등산로23	북삼고등학교-등산로23	1.0	1.0	
27	구미역-등산로3	구미역-등산로3	5.5	5.5	
28	금오지-등산로27	금오지-등산로27	0.3	0.3	
29	사곡동-등산로25	사곡동-등산로25	0.75	0.75	
30	-	남통동(등산로11) ~남통휴게소(등산로17)	-	0.13	신설

[등산로 (변경)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등산로1 등산로6	- 기존 등산로 시설의 변경	- 탐방객 안전확보를 위한 탐방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산로30	- 신설 등산로의 조성	- 지역의 상징적 경관명소 조성을 위함	- 도립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

* 공원계획변경 조건사항

- 공원사업시행(등산로 신설) 허가 시 교통약자의 이용을 고려한 설계(변경) 반영 필요

나. 특수운송시설 계획(변경없음)

시 설 명	노 선 명	연장(km)	비 고
삭 도	소주차장-유스호스텔	0.805	

1) 단독시설계획 총괄(변경)

구 분	수 량	비 고
계	44	신설 1
휴게소	4	
조경시설	1	
대피소	6	
전망대	6	
야영장	1	
주차장	5	신설 1
선유장	2	
유스호스텔	1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1	
경상북도청소년수상훈련장	1	
배수지	2	
음수대	4	
화장실	6	
자연학습장	1	
가압장	1	
전시장	1	
체육시설	1	

2) 단독시설계획(변경)

시설명	명칭	규모(㎡)	위치	비 고
휴게소 (4)	명금휴게소①	50	남통동 산94	
	정상휴게소②	50	남통동 산33	
	남통휴게소③	50	형곡동 690-5	
	지경휴게소④	50	북삼읍 송오리 산31-10	
조경시설 (1)	성안조경시설①	2,240	남통동 산94	

시설명	명칭	규모(㎡)	위치	비 고
대피소(6)	남통대피소①	100	남통동 남통고개 부근	
	송오대피소②	100	북삼읍 송오리 산31-1	
	법성사대피소③	100	남통동 산33	
	지경대피소④	100	북삼읍 송오리 산30	
	남통봉대피소⑤	100	남통동 산9	
	상모대피소⑥	100	상모동 산24-2	
전망대 (6)	금오정전망대①	30	금오지	
	대관정전망대②	30	남통동 산5-1	
	진덕정전망대③	30	남통동 산30	
	남통정전망대④	30	남통동 산7	
	전망대⑤	30	남면 오봉리 산184-1	
	전망대⑥	30	남면 오봉리 산184-1	
야영장(1)	남통1야영장①	30,660	남통동 산147	
주차장(5)	입구주차장①	45,000	남통동 공원입구	
	남통주차장②	18,000	남통동 산7	
	야영장1주차장③	10,000	남통동 347	
	형곡주차장④	340	형곡동 산33-5	
	제5주차장⑤	2,690	남통동 산5-1	신설

시설명	명칭	규모(㎡)	위치	비 고
선유장(2)	금오선유장①	300	남통동 산28-5	
	대성선유장②	3,660	수점동 9-1일대	
유스호스텔(1)	유스호스텔①	4,800	남통동 산94	
청소년수련원(1)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①	96,407	대성리 산120-2	
청소년 수상훈련장 (1)	경상북도청소년 수련원 수상훈련장①	1,400	대성리 90대 일원	
배수지 (2)	배수지①	3,440	수점동 산5	
	배수지②	945	남통동 54	
음수대 (4)	음수대①	10	남통동 산94	
	음수대②	10	약사암 부근	
	음수대③	10	남통휴게소 부근	
	음수대④	10	대관전망대 부근	
화장실 (6)	정상화장실①	30	금오산 정상	
	폭포화장실②	30	해운사~대혜폭포 사이	
	해운사화장실③	30	외성~해운사사이	
	법성사화장실④	60	법성사 부근	
	금오동천화장실⑤	20	지경휴게소 부근	
	화장실⑥	30	형곡전망대 부근	
자연학습장(1)	자연학습장①	33,600	금오지 부근	
가압장(1)	가압장①	300	금오지 부근	
전시장(1)	전시장①	55,517	채미정 부근	
체육시설(1)	체육시설①	2,500	남통동 414-69	

[주차장(신설)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제5주차장⑤	- 신설 주차장 조성	- 탐방객 이용 시 부족한 주차시설 마련을 위함	

라. 공원마을지구(집단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 남통동 지구(변경)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454,601	454,601	75,137		
상업시설지	17,324	17,324	10,370	60	
매 점	370	370	210	60	1동(3층이하)
케이블카시점상가	5,951	5,951	3,560	60	1동(3층이하)
종합단독상가	11,003	11,003	6,600	60	26동(3층이하)
숙박시설지	43,076	43,076	25,030	-	
관광숙박시설	38,000	38,000	22,000	60	1동(5층이하)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5,076	5,076	3,030	60	6동(3층이하)
공공시설지	1,466	1,466	730	-	
관리사무소	1,120	1,120	560	50	2동(3층이하)
관리분소	150	150	70	50	1동(3층이하)
경찰관파출소	196	196	100	50	1동(3층이하)
녹 지	82,749	81,255	-	-	
기타시설지	283,504	284,998	39,007	-	
잔디광장	11,095	11,095	-	-	
채 미 정	20,247	20,247	4,049	20	
기 념 비	760	760	-	-	
자연학습장	116,341	116,341	23,000	20	
어린이놀이터	26,822	26,822	5,300	20	
휴식공간	2,124	2,124	-	-	
소주차장	1,780	1,780	-	-	
오수펌프장	400	400	-	-	
다목적광장	19,390	19,390	-	-	
화장실 및부속시설	1,100	1,100	220	20	
유허비각	100	100	-	-	
도로	50,410	50,372	-	-	
전시장	30,598	30,598	6,120	20	
야은역사체험관	2,337	2,337	318	20	
제5주차장	-	1,532			
유 보 지	26,482	26,482			

○ 수점동 지구(변경없음)

구 분	변경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합 계	246,863	-	-	
유 보 지	246,863	-	-	

2) 도로계획(변경)

○ 남통동 지구(변경)

유 형	호선	폭원 (m)	연장(m)	면적(㎡)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변경			
계			6,069	50,410	50,372			
중로2류	소계		1,372	20,950	20,950			
	1-1	15	840	12,970	12,970	공원입구 (집단시설지구계)	소주차장	진입로
	1-2	15	532	7,980	7,942	중 2류 1-1	남통계곡	"
소로2류	소계		2,438	19,631	19,631			
	1-1	8	152	1,216	1,216	다목적광장	소 3류 1-4	지선도로
	1-2	8	152	1,216	1,216	다목적광장	소 3류 1-4	"
	1-3	8	2,134	17,199	17,199	백 운 교	자연학습장	"
소로3류	소계		1,360	8,031	8,031			
	1-1	6	85	510	510	소 2류 1-2	중 2류 1-2	세로
	1-2	6	38	228	228	"	소 2류 1-1	"
	1-3	6	58	348	348	"	소 3류 1-6	"
	1-4	6	195	1,170	1,170	중 2류 1-2	"	"
	1-5	6	30	180	180	소 2류 1-2	"	"
	1-6	6	116	696	696	다목적광장	소 3류 1-4	"
	1-7	6	36	216	216	소 2류 1-1	중 2류 1-2	"
	1-8	6	180	1,080	1,080	중 2류 1-1	호 텔	"
	1-9	6	170	1,020	1,020	소 주차장	케이블카시점	"
	1-10	6	170	1,020	1,020	소 3류 1-6	관리사무소	"
	1-11	6	239	1,434	1,434	소 2류 1-3	자연학습장 내 향토초가집	"
	1-12	3	43	129	129	중 2류 1-1	야은역사체험관	"
소로3류	소계		899	1,798	1,798			
	2-1	2	539	1,078	1,078	남통교	호텔	산책로
	2-2	2	90	180	180	호텔	산 29-2 임 (집단시설지구계)	"
	2-4	2	50	100	100	중 2류 1-1	채미정	산책로
	2-5	2	20	40	40	소 2류 1-9	매점	"
	2-6	2	200	400	400	호텔	소 3류 1-9	"

○ 수점동 지구(변경없음) : 도로계획 없음

○ 조 교(변경없음) : 계획 없음

3) 상수도 계획(변경없음)

지 구 별	수 원	시설용량(m ³)	배 수 지	급 수 관 로	비 고
남통지구	구미시 상수	2,807	배수지 1개소	D=40~300m/m	
수점지구	-	-	-	-	계획 없음
지경계곡	지 하 수	42	취수장 1개소	D=4m/m	

4) 하수도 계획(변경없음)

구 분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남통지구	흡관부설	D=250~600m/m	3,960m	우수 1,570m
	U형측구	0.4 × 0.4m	450m	오수 2,390m
	우수받이	-	158개소	
	집 수 정	-	2개소	
	오수펌프장	1식	1개소	
수점지구	-	-	-	계획 없음

5) 전기·통신계획(변경없음)

○ 전기설비(변경없음)

구 분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남통지구	전 기 관 로	70m/m PVC	960m	
	가로등 케이블	28m/m PVC	1,200m	
	맨 홀	1.6 × 1.6 × 1.8m	20개소	
	가 로 등	HF 250W	30주	
수점지구	-	-	-	계획 없음

○ 통신시설(변경없음)

구 분	종 류	규 격	비 고
남통지구	통신회선	300m	인근 단독시설지 포함
수점지구	-	-	계획 없음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상수도계획(변경없음)

수 원	수 량	비 고
구미시 상수	L=1.2km L=1.2km	케이블카시점~영흥정화장실 야영장화장실~법성사신규화장실

○ 하수도계획(변경없음)

종 류	수 량	비 고
오 수 관 로	L=1.2km L=1.2km	케이블카시점~영흥정화장실 야영장화장실~법성사신규화장실

○ 유지용수 공급계획(변경없음)

종 류	수 량	비 고
도 수 관 로	L=4.0km	금오지~케이블카시점, 법성사계곡

○ 배수지(변경없음)

종 류	시설용량(m³)	배 수 지	급 수 관 로	비 고
구미시 상수	150	배수지 1개소	D = 50~100 m/m	

6.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가. 관리대상시설(변경없음)

시설별	시설명	위치	규격	관리자	비고
도로	진입도로	공원입구 -주차장	L=3.6km, B=6~8m	구미시	
	"	공원입구 -소주차장	L=1.0km, B=7m	"	
	"	대성지 -자연학습장	L=1.1km, B=12m	"	
	자연학습장 진입로	백운교 -자연학습장	L=2.13km, B=6~8m	"	
단독 시설	아영장	구미시 남통동		구미시	
	성안조경 시설	구미시 남통동 산94		"	
	화장실	구미시 남통동 산94	5개소	구미시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1개소, (20㎡)	칠곡군	
	전망대 (팔각정1동포함)	구미시 남통동	4개소	구미시	
		김천시 남면 오봉리	2개소	김천시	
	소각장	구미시 남통동	17개소	구미시	
	케이블카	"	4,955㎡, 3동 51인승-길이 805m	"	
	선유장	"	보트68, 유선2 구조선3	시설주	
	유스호스텔	구미시 남통동 산94	2,420㎡(1동)	구미시	
	약사암	구미시 남통동 33-1	한식 56㎡, 4동	자 체	
	해운사	구미시 남통동 산94	한식 3동(126㎡)	"	
	대혜폭포	구미시 남통동 산94	H=2.7m	구미시	
	도선석굴	"	L=7.2m, B=4.8m	"	
	금오산성	"	L=6.2m, B=2.0m	"	

시설별	시설명	위치	규격	관리자	비고
단독 시설	마애석불	구미시 남통동 산94	H=4.0m, B=1.2m	자 체	
	대각국사비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H=3.5m, B=1.2m	자 체	
	대각사	"	한식 3동	"	
	법성사	구미시 남통동 358	한식 2동	자 체	
	굴암사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한식 2동	"	
	대혜담	구미시 남통동	L=48m, B=18m	구미시	
	전시장	구미시 남통동 산28-1	A=55,517㎡	구미시	
	체육시설	구미시 남통동 414-69	A=2,500㎡	구미시	
집단 시설 지구 내	자연학습장	구미시 남통동 산37	대지109,941㎡ 건평5,388㎡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구미시 남통동 200-2	대지6,400㎡ 건평1,265㎡	구미시	
	관리사무소	구미시 남통동 274-4	대지 212㎡ 건평 169㎡	구미시	
	소주차장	구미시 남통동	1,779㎡	"	
	다목적광장	"	19,398㎡	"	
	어린이 놀이터	"	26,922㎡	시설주	
	호 텔	구미시 남통동 산24-9	38,000㎡ (1동)	"	
	백 운 제	구미시 남통동 237	한식 3동	구미시	
	채 미 정	구미시 남통동 29	한식 4동	"	
	전 시 장	구미시 남통동 산28-1	A=30,598㎡	구미시	

나. 철거·이전시설(변경없음)

다. 금지대상 행위의 결정(변경없음)

7.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 2025. 7. 14.

8. 공원관리청 : 변경없음

- 경상북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 김천시장(산림녹지과장), 구미시장(공원녹지과장), 칠곡군수(환경관리과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9.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공원계획변경 관계도서는 구미시(공원녹지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6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말소일)	처분근거
이지 종합건설(주) (박원규)	토목건축공사업 (03-0079)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장미길 60-17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보증가능 금액)	등록말소 (2025. 7. 14.)	「건설산업기 본법」 제83조 제3호의2
(주)유성건설 (김재형, 남동강)	토목건축공사업 (977) 조경공사업 (6001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6-0005)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로 9, 801호(펜타 힐즈엠타워)			

2.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63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청문사유	법적근거
주식회사 무진종합건설 (유현덕)	건축공사업 (01-4816)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24길 9-45, 거상빌딩 별관 102호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 보완 미이행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주식회사 가온건설산업 (안정현)	건축공사업 (01-49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원로26번길 16-14, 1층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2. 열람·확인 기간 : 2025. 7. 14. ~ 2025. 7. 28.

3. 열람·확인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4. 안내사항

가.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문서 또는 구술로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65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 기간 : 2025. 7. 14. ~ 2025. 7. 28.(15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청문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근거
(주)오남건설 (강재구)	건축공사업 (16-050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2길 28-26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시정명령 불이행	영업 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주)유성건설 (김재형, 남동강)	토목건축 공사업 (977)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16-0005) 조경공사업 (60012)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2로 9, 801호 (펜타힐즈엠타워)			
선경종합 건설주식회사 (최선규)	토목공사업 (150797) 건축공사업 (150622)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6길 1			
이지종합건설(주) (박원규)	토목건축 공사업 (03-0079)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장미길 60-17			
지산종합건설주식 회사 (정철오)	건축공사업 (03-0926)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동해대로 4351, 비동			
주식회사 바른종합건설 (신인수)	건축공사업 (03-057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22, 상가3호			
주식회사 태상건설 (김중권)	건축공사업 (13-0785)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46-33, 1층			

가.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7. 28.(월) 14:00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부속 회의실)

나. 청문주재자 : 경상북도청 신도시조성지원과 한상욱

다. 청문참석자 :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라. 지참물

- 1) 참석자 도장, 신분증
- 2)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자격입증 서류
-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4) 청문 통지내용에 대한 반증 혹은 소명자료

3.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054-880-3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7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상북도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5. 7. 7.자 조직개편 (정책기획관-8264, 2025.7.4.)

2. 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2025. 7. 14.

3. 등록 공인 목록

등 록							
공 인 명	인 영	규격(cm) (서체)	재질	공 인 명	인 영	규격(cm) (서체)	재질
경상북도경제 혁신추진단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훈민정음체)	흑인조	경 상 북 도 산림재난혁신 사업 단 일 상 경비출납원인		1.8*1.8 (훈민정음체)	흑인조
경상북도마을 주택재창조 사업단 일 상 경비출납원인		1.8*1.8 (훈민정음체)	흑인조				

4. 폐기 공인 목록

폐 기							
공 인 명	인 영	규격(cm) (서체)	재질	공 인 명	인 영	규격(cm) (서체)	재질
경 상 북 도 민자활성화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훈민정음체)	흑인조				

경상북도 공고 제2025-1578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주식회사 한조엔지니어링 대표 김동현 경북-2-466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방아실길 51, B동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사항 50일 내 미보완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1.5개월 (2025. 7. 14. ~ 2025. 8. 27.)

2.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본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지역개발과 담당자(☎054-880-39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고 시

구미시 고시 제2025-179호

**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구미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부곡동 407번지 구미 도시계획시설(학교:구미대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구미시 부곡동 40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구미 도시계획시설(대학:구미대학교) ○ 명 칭 : 구미 도시계획시설(대학:구미대학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	<table><tr><td>구 분</td><td>당 초</td><td>변 경</td><td>비 고</td></tr><tr><td>대지면적</td><td>136,760㎡</td><td>136,760㎡</td><td></td></tr><tr><td>건축면적</td><td>21,692.92㎡</td><td>21,463.24㎡</td><td></td></tr><tr><td>연 면 적</td><td>65,718.07㎡</td><td>66,448.32㎡</td><td></td></tr></table>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136,760㎡	136,760㎡		건축면적	21,692.92㎡	21,463.24㎡		연 면 적	65,718.07㎡	66,448.32㎡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136,760㎡	136,760㎡															
건축면적	21,692.92㎡	21,463.24㎡															
연 면 적	65,718.07㎡	66,448.3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 :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이사장 안 영 태 -주 소 : 구미시 야은로 37(부곡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990년 9월 19일 ~ 2034년 12월 31일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 붙임과 같음																

< 붙임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변경없음]

번호	위 치		지목	토지대장상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등기부등본상)		비고
	시. 동	지번				주 소	성 명	
계					136,760	[변경없음]		
1	구미.부곡	407	학	136,760	136,760	구미시 부곡동 407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	

※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0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끝.

영주시 고시 제2025-103호

영주 도시계획시설(공원 : 구성공원) 실시계획 실효 고시

영주시 영주동 43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구성공원)사업 실시계획(영주시 고시 제2020-8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실효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영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3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구성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26,425㎡
- 실시계획인가 면적 : 26,425㎡

○ 시설개요

구분	실시계획 인가면적(m ²)	비고
합계	26,425	
도로 및 광장	2,164	
조경시설	290	
휴양시설	854	
운동시설	918	
교양시설	2,103	
녹지	20,09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영주시청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2020. 6. 29.)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간

6. 실효일 : 2025. 6. 29.

7. 실효사유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실시계획이 실효됨.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총 면 적 : 40필지, 26,425m²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영주시	영주동	-	-	34,769.7	26,425	-	-	-	-	-	-	-
1	영주시	영주동	290-16	도	298.4	18	국(기획재정부)						
2	"	"	293-3	도	1,037.8	10	영주시						
3	"	"	298-23	대	729	591	국(기획재정부)						
4	"	"	408	대	336	37	대한불교조계종영주포교당	경상북도영주시영주동411-2					
5	"	"	409-2	전	179	179	영주시						
6	"	"	409-4	잡	572.8	572.8	영주시						
7	"	"	410	대	629.5	629.5	영주시						
8	"	"	411-1	대	111.8	24	영주시						
9	"	"	411-2	종	325.2	15	대한불교조계종영주포교당	경상북도영주시영주동411-2					
10	"	"	411-6	대	139	10	영주시						
11	"	"	411-8	도	30	7	영주시						
12	"	"	431-8	대	314.7	2	남*홍	경상북도영주시가흥동					
13	"	"	431-16	대	132	13	권*현	경상북도영주시영주동					
14	"	"	431-19	대	83	6	김*옥	경상북도영주시중앙로					
15	"	"	431-20	대	108.7	1	김*임	경상북도영주시원당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16	영주시	영주동	432-1	임	4,638	4,550	강*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7	"	"	432-2	임	46	1	영주시						
18	"	"	436-1	대	434.3	26	영주시						
19	"	"	436-8	도	890.2	123	영주시						
20	"	"	437-2	대	568.1	1	영주시						
21	"	"	437-14	대	128.4	12	영주시						
22	"	"	438	대	1,186.2	1,186.2	안동권씨 사복재공 파문중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38					
23	"	"	439-1	임	5,579	5,286	국 (산림청)						
24	"	"	439-2	임	5,936	5,921	국 (산림청)						
25	"	"	439-3	임	5,987.2	5,979	안동권씨 사복재공 파문중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38					
26	"	"	439-5	대	135.3	42	영주시						
27	"	"	439-8	임	127	127	안동권씨 사복재공 파문중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38					
28	"	"	439-9	임	336	32	영주시						
29	"	"	439-12	대	229	1.5	영주시						
30	"	"	439-13	대	308.5	307	국(기획 재정부)						
31	"	"	439-14	대	287	25	영주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2	영주시	영주동	439-16	임	597.2	57	국 (산림청)						
33	"	"	439-17	임	512.5	105	영주시						
34	"	"	439-18	임	84.4	71	영주시						
35	"	"	439-19	임	36.2	30	영주시						
36	"	"	439-20	임	224.7	102	영주시						
37	"	"	453-6	임	132	91	대한 불교 조계종 영주포 교당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11-2					
38	"	"	453-7	도	231.2	216	국 (건설부)						
39	"	"	453-18	도	878.9	10	국 (건설부)						
40	"	"	470-276	도	229.5	8	영주시						

영주시 고시 제2025-104호

영주시 도시계획시설(공원 : 구성공원)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구성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부분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영 주 시 장

1. 실효일자 : 2025. 6. 29.

2. (부분)실효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실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효력을 잃은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실효됨.

※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공원 결정이 유효함. (사유지만 부분실효)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부분실효) 내용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구성공원	근린공원	영주시 영주동 439-2번지 일원	26,368	감) 12,007.2	14,360.8	1973.06.09. (건설부고시 제237호)	부분실효 (사유지)

4.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 참조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5. 관계도서는 영주시청 공원관리과(054-639-64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계	영주시	영주동	-	-	34,172.5	26,368	-	-	-	-	-	-	기정
					20,802.5	14,360.8	-	-	-	-	-	-	변경
1	영주시	영주동	290-16	도	298.4	18	국(기획재정부)						
2	"	"	293-3	도	1,037.8	10	영주시						
3	"	"	298-23	대	729	591	국(기획재정부)						
4	"	"	408	대	336	37	대한불교조계종 영주 포교당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11-2					실효
5	"	"	409-2	전	179	179	영주시						
6	"	"	409-4	잡	572.8	572.8	영주시						
7	"	"	410	대	629.5	629.5	영주시						
8	"	"	411-1	대	111.8	24	영주시						
9	"	"	411-2	종	325.2	15	대한불교조계종 영주 포교당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11-2					실효
10	"	"	411-6	대	139	10	영주시						
11	"	"	411-8	도	30	7	영주시						
12	"	"	431-8	대	314.7	2	남*홍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실효
13	"	"	431-16	대	132	13	권*현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실효
14	"	"	431-19	대	83	6	김*옥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실효
15	"	"	431-20	대	108.7	1	김*임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실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	영주시	영주동	432-1	임	4,638	4,550	강*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실효
17	"	"	432-2	임	46	1	영주시						
18	"	"	436-1	대	434.3	26	영주시						
19	"	"	436-8	도	890.2	123	영주시						
20	"	"	437-2	대	568.1	1	영주시						
21	"	"	437-14	대	128.4	12	영주시						
22	"	"	438	대	1,186.2	1,186.2	안동권씨 사복재공 파문중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38					실효
23	"	"	439-1	임	5,579	5,286	국 (산림청)						
24	"	"	439-2	임	5,936	5,921	국 (산림청)						
25	"	"	439-3	임	5,987.2	5,979	안동권씨 사복재공 파문중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38					실효
26	"	"	439-5	대	135.3	42	영주시						
27	"	"	439-8	임	127	127	안동권씨 사복재공 파문중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38					실효
28	"	"	439-9	임	336	32	영주시						
29	"	"	439-12	대	229	1.5	영주시						
30	"	"	439-13	대	308.5	307	국(기획 재정부)						
31	"	"	439-14	대	287	25	영주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2	"	"	439-17	임	512.5	105	영주시						
33	"	"	439-18	임	84.4	71	영주시						
34	"	"	439-19	임	36.2	30	영주시						
35	"	"	439-20	임	224.7	102	영주시						
36	"	"	453-6	임	132	91	대한 불교 조계종 영주 포교당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11-2					실효
37	"	"	453-7	도	231.2	216	국 (건설부)						
38	"	"	453-18	도	878.9	10	국 (건설부)						
39	"	"	470-276	도	229.5	8	영주시						

문경시 고시 제2025-124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문 경 시 장



1.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사업지구	위 치	필지	면적(㎡)	비고
상초지구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288번지 일원	148	82,471.0	
하초지구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265-1번지 일원	96	35,912.0	
갈평지구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418번지 일원	541	614,739.4	
신현지구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1-2번지 일원	331	119,286.0	

2. 금회 변경사항

사업지구	토지이용규제 내용	변경사항
상초지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1개소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지구 등 선형 변경
하초지구	·도로구역 : 도로구역 1개소 ·영농여건불리농지 ·자연공원 : 도립공원,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갈평지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 도로 1개소, 학교 1개소 ·도로구역 : 도로구역 2개소, 접도구역 1개소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진흥지역 ·토석채취제한구역 ·폐광지역진흥지구	
신현지구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 도로 1개소 ·도로구역 : 도로구역 3개소, 접도구역 1개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역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1]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서 열람 가능함

5.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종합민원과(☎054-550-6784)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별첨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갈평	자연취락지구	문경읍 갈평리 564-2번지 일원	-	65,189	경고553 10-12-6	
변경	1	갈평	자연취락지구	문경읍 갈평리 564-2번지 일원	-	64,930	-	
기정	26	신현	자연취락지구	마성면 신현리 319-5번지 일원	-	96,843	경고553 10-12-6	
변경	26	신현	자연취락지구	마성면 신현리 319-5번지 일원	-	97,012	-	

■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갈평	•자연취락지구 면적 축소 A = 65,189 → 64,930m ² (감 259m ²)	•갈평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 축소
26	신현	•자연취락지구 면적 증가 A = 96,843 → 97,012m ² (증 169m ²)	•신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가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9~ 180	주간선	7,837	오천리828-2	견탄리569-1 소로2-1	일반	-	경고553 10-12-6	국도 3호선
변경	중로	2	1	19~ 180	주간선	7,837	오천리828-2	견탄리569-1 소로2-1	일반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9	7~8	주간선	25,390	적성리1228	요성리 256-2 문경도시지역 경계	일반	-	경고553 10-12-6	지방도 901호선
변경	소로	2	9	7~8	주간선	25,390	적성리1228	요성리 256-2 문경도시지역 경계	일반	-		선형 변경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1	중로2-1	• 선형변경 B = 19~180m, L = 7,837m	• 신현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9	소로2-9	• 선형변경 B = 7~8m, L = 25,390m	• 갈평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선형변경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주차장	하초리 264번지 일원	30,399	증) 67.9	30,466.9	문고1 04-01-07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주차장	• 주차장 면적 증가 A = 30,399 → 30,466.9m ² (증 67.9m ²)	• 하초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가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용흥 초등학교	초등학교	갈평리 563번지 일원	19,238	증) 251.5	19,489.5	문고29 10-7-26	

■ 학교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용흥 초등학교	• 초등학교 면적 증가 A = 19,238m ² → 19,489.5m ² (증 251.5m ²)	• 갈평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가

문경시 고시 제2025-125호

**도시계획시설 [도로:점촌4동 임촌
도시계획도로(소로3-355) 개설공사]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문경시 공평동 일원의 “점촌4동 임촌 도시계획도로(소로3-355)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문 경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 점촌4동 임촌 도시계획도로(소로3-355) 개설공사

나.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동 일원

다. 사업의 규모

사 업 명	위 치	명 칭	연 장	토 지 내 역	비고
점촌4동 임촌 도시계획도로(소로3-355) 개설공사	문경시 공평동	소로3-355	1공구 : 138.8m 2공구 : 98.5m	문경시 공평동 311-1번지 외 11필지	

라. 사업의 목적 : 시민의 교통편의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마.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문경시 당교로 225

나. 성 명 : 문경시장

※ 관계서류 및 도면은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면게재 생략)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문경시 공평동	311-1	도로	2,368	618	-	국(농림축산 식품부)			
2	문경시 공평동	311-5	구거	7,140	69	-	국(농림축산 식품부)			
3	문경시 공평동	307-29	답	87	87	-	문경시			
4	문경시 공평동	307-31	답	36	36	-	문경시			
5	문경시 공평동	370-9	하천	802	48	-	문경시			
6	문경시 공평동	300-4	대	287	287	-	문경시			
7	문경시 공평동	300-1	대	271	271	-	문경시			
8	문경시 공평동	299-14	도로	103	103	-	문경시			
9	문경시 공평동	298-11	대	8	8	-	문경시			
10	문경시 공평동	299-13	대	46	46	-	문경시			
11	문경시 공평동	299-15	도로	3	3	-	문경시			
12	문경시 공평동	299-12	대	40	40	-	문경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문경시 공평동	300	①주택	토조 시멘트 기와 지붕	29.75	㎡	경상북도 점촌시 공평동***	임*균	경상북도 점촌시 공평동***	임*배	
			②주택	토조 슬레트지붕	16.52	㎡	경상북도 점촌시 공평동***	임*균	경상북도 점촌시 공평동***	이*수	

문경시 고시 제2025-126호

문경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 도시관리계획(도로,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문 경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3	6~8	국지	238	홍덕738-28 중로1-2	홍덕산10-4 소로3-221	일반	-	건고2926 66-18-8	
변경	소로	3	43	6~8	국지	193	홍덕733-28 중로1-2	홍덕산10-4 소로2-224	일반	-	-	노선 단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43	소로3-43	·노선단축 - B = 6~8m - L = 238 → 193m (감:45m)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노선 단축(주차장)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2	주차장	홍덕동 611-5번지 일원	-	증)10,129.8	10,129.8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주차장	·주차장 신설 - A = 10,129.8㎡	·돈달산 및 홍덕생활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신설

3. 문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청송군 고시 제2025-75호

**청송군계획시설(도로:소로2-성1호선,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송전선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재고시**

청송군 고시 제2016-11호(2016.2.29.) 및 제2018-107호(2018.12.31.) 및 제2021-120호(2021.12.23.), 제2022-35호(2022.05.23.), 제2022-78호(2022.11.10.), 제2023-72호(2023.6.29.)호, 제2023-97(2023.9.4.)호, 제2023-133(2023.12.7.)호, 제2024-104(2024.10.17.)호로 고시된 『청송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사업 협의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청 송 군



☐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사업의 규모 등(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 위치	비고
청송면봉산 풍력발전단 지조성공사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2-성1호선) 개설공사	-소로2-성1호선 L=3,457m, B=8.0m	안덕면 성재리 9-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군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풍력발전단지 A=143,698㎡, 42MW	안덕면 성재리 산24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전기 공급설비:송전철탑, 송전선로)사업	군계획시설(전기 공급설비:송전철탑, 송전선로)사업	-송전철탑 신설N0.1~N0.6 -송전선로 L=2.01Km, A=43,455㎡	안덕면 장전리 산69-1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청송면봉산풍력(주) 조 병 련,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3. 사업기간(변경없음)

- ①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2016. 02. 29. ~ 2026. 06. 30.
- ②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2016. 02. 29. ~ 2026. 06. 30.
- ③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송전선로)사업: 2023. 12. 07. ~ 2026. 06.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5. 재고시 사유 : 관계기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과의 공익성 협의가 완료 됨에 따라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행정절차상 적법성 확보를 위해 재고시

※ 본 재고시는 기존 고시의 행정절차 보완을 위한 것이며, 사업내용에는 변경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로2-성1호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	(㎡)	주소	성명	
합계	총 47필지			517,403	84,842			
1	안덕면 성재리	9-1	전	355	190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2	안덕면 성재리	14-3	답	56	56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3	안덕면 성재리	14-1	답	140	140	-	청송군	
4	안덕면 성재리	14-2	답	53	53	-	청송군	
5	안덕면 성재리	16-1	답	43	43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6	안덕면 성재리	17-3	답	521	521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7	안덕면 성재리	17-1	답	274	274	-	청송군	
8	안덕면 성재리	17-2	답	64	64	-	청송군	
9	안덕면 성재리	23-1	전	48	48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10	안덕면 성재리	24-4	대	388	329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11	안덕면 성재리	24-5	전	667	545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12	안덕면 성재리	27-1	답	218	175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	(㎡)	주소	성명	
13	안덕면 성재리	31	과	3,760	16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31-2	박소영	근저당권 (한국농어촌 공사)
14	안덕면 성재리	286-4	창	268	268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15	안덕면 성재리	286-5	과	588	432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16	안덕면 성재리	330-3	잡	462	462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17	안덕면 성재리	334-1	과	57	57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18	안덕면 성재리	533	도	1,147	22	-	청송군	
19	안덕면 성재리	658	천	270,072	17,031	-	국(건설 교통부)	
20	안덕면 성재리	658-31	천	690	164	-	국(건설 교통부)	
21	안덕면 성재리	산15-5	임	1,555	107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군	
22	안덕면 성재리	산17	임	66,760	223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2길11	김정우	지상권(한국 전력공사)
23	안덕면 성재리	산17-1	임	8,317	8,317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지상권(한국 전력공사)
24	안덕면 성재리	산17-2	임	362	362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 봉산풍력(주)	지상권(한국 전력공사)
25	안덕면 성재리	산17-3	임	330	330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지상권(한국 전력공사)
26	안덕면 성재리	산18	임	38,764	83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	(㎡)	주 소	성 명	
25	안덕면 성재리	산17-3	임	330	330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지상권(한국 전력공사)
26	안덕면 성재리	산18	임	38,764	83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27	안덕면 성재리	산18-2	임	2,283	2,283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28	안덕면 성재리	산20	임	9,760	252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29	안덕면 성재리	산20-2	임	15,813	1,186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30	안덕면 성재리	산20-4	임	7,712	7,712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31	안덕면 성재리	산20-5	임	7,457	7,457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32	안덕면 성재리	산20-6	임	8,513	8,513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33	안덕면 성재리	산20-7	임	16,924	288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34	안덕면 성재리	산20-8	임	6,482	245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35	안덕면 성재리	산21-1	임	4,244	4,244	-	김철휘	
36	안덕면 성재리	산22	임	8,080	158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37	안덕면 성재리	산22-2	임	2,897	191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	(㎡)	주 소	성 명	
38	안덕면 성재리	산22-4	임	5,541	5,541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39	안덕면 성재리	산24-2	임	1,854	1,854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40	안덕면 성재리	산25-1	임	8,692	151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41	안덕면 성재리	산25-6	임	5,732	5,732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42	안덕면 성재리	산25-7	임	2,862	2,862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43	안덕면 성재리	산25-8	임	3,177	3,016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44	안덕면 성재리	산27-4	임	239	239	-	청송군	
45	안덕면 성재리	산69-3	임	1,286	710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46	안덕면 성재리	산87-6	임	345	345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47	안덕면 성재리	산87-7	임	1,551	1,551	경북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	

-전기공급설비-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	(㎡)	주 소	성 명	
합계	총 17필지			10,700,409	143,698			
1	안덕면 성재리	산24-3	임	8,421	7,312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주)	
2	안덕면 성재리	산25-5	임	8,031	1,833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주)	
3	안덕면 성재리	산25-2	임	25,933	23,832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주)	
4	안덕면 성재리	산25-3	임	10,000	472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직동안길 15	김상관	
5	안덕면 성재리	산25-8	임	3,177	161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주)	
6	안덕면 성재리	산26-1	임	48,790	10,540	경북 청송군 현동면 인지리307-1	동래정씨 직장공인	
7	안덕면 성재리	산26-2	임	3	3	-	국(국토 교통부)	
8	안덕면 성재리	산27-1	임	2,045,073	14,166	-	청송군	
9	안덕면 성재리	산27-2	임	3	3	-	국(국토 교통부)	
10	안덕면 장전리	산69-1	임	2,123,586	6,567	-	국 (산림청)	
11	안덕면 장전리	산69-3	임	1,286	33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 산풍력(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	(㎡)	주 소	성 명	
12	현동면 개일리	산87-1	임	1,522,386	24,047	-	국 (산림청)	
13	현동면 개일리	산87-2	임	3	3	경북 청송군 현동면 개일동 501	정만석 외 1인	
14	현동면 개일리	산91-1	임	359,402	3,520	-	청송군	
15	현동면 개일리	산91-2	임	3	3	-	청송군	
16	현동면 개일리	산138	임	149,157	3,372	-	국 (산림청)	
17	현동면 월매리	산49-1	임	4,406,155	47,831	-	국 (산림청)	

-송전철탑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주 소	성 명	
합계	총 5필지			3,691,414	3,572			
1	안덕면 성재리	산25	임	11,434	945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직동안길 15	김상관	
2	안덕면 성재리	산25-2	임	25,933	285	경북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3	안덕면 성재리	산25-4	임	8,075	1,122	경북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4	안덕면 장전리	산69-1	임	2,123,586	565	-	국(산림청)	
5	현동면 개일리	산87-1	임	1,522,386	655	-	국(산림청)	

-송전선로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주 소	성 명	
합계	총 13필지			3,802,074	43,455			
1	안덕면 성재리	산17	임	66,760	4,663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2길11	김정우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	안덕면 성재리	산21	임	21,541	2,128	-	김철휘	
3	안덕면 성재리	산25	임	11,434	3,805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직동안길 15	김상관	
4	안덕면 성재리	산25-1	임	8,692	2,277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5	안덕면 성재리	산25-2	임	25,933	4,707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6	안덕면 성재리	산25-4	임	8,075	1,426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7	안덕면 성재리	산25-6	임	5,732	950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8	안덕면 성재리	산25-7	임	2,862	862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9	안덕면 성재리	산25-8	임	3,177	501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10	안덕면 장전리	산69-1	임	2,123,586	11,496	-	국(산림청)	
11	현동면 개일리	산87-1	임	1,522,386	9,752	-	국(산림청)	
12	현동면 개일리	산87-6	임	345	306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13	현동면 개일리	산87-7	임	1,551	582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2648, 2층	청송면봉산 풍력(주)	



시 군

공 고

안동시 공고 제2025-1615호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 공고

안동시 송현동 295-3 송현 1공원, 안동시 송현동 316-2 태화1공원, 안동시 태화동 891 태화3공원 조성을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안 동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사유

-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도시공원의 변화된 이용자 행태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원시설 변경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도심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송현1공원	어린이 공원	안동시 송현동 295-3 일원	1,909.8	-	1,909.8	경고 제1989-32호 (1989.03.07.)	
기정	2	태화1공원	어린이 공원	안동시 송현동 316-2	2,230.5	-	2,230.5	경고 제1989-32호 (1989.03.07.)	공원명 변경
변경	2	송현3공원	어린이 공원	안동시 송현동 316-2	2,230.5	-	2,230.5		
기정	3	태화3공원	어린이 공원	안동시 태화동 891	2,062.3	-	2,062.3	경고 제1982-91호 (1982.06.02.)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송현3공원	- 기정 : 태화1공원 - 변경 : 송현3공원	○ 행정구역과 상이한 공원명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방지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공원명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송헌1공원

가. 공원조성계획(총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09.8	1,909.8	100.0	100.0	3	3	119.2	125.4	119.2	125.4			
시설면적 합계			1,045.6	959.9	54.7	50.3	3	3	119.2	125.4	119.2	125.4			감)85.7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소계	426.4	566.9	22.3	29.7									증)140.5
		도로	239.3	361.6	12.5	19.0									증)122.3
		광장	187.1	205.3	9.8	10.7									증)18.2
	휴양시설	97.4	89.3	5.1	4.7									감)8.1	
	유흥시설	363.7	79.1	19.0	4.1									감)284.6	
	운동시설	10.7	68.6	0.6	3.6									증)57.9	
	편익시설	28.2	51.6	1.5	2.7	-	1	-	21.0	-	21.0			증)23.4	
	관리시설	119.2	104.4	6.2	5.5	3	2	119.2	104.4	119.2	104.4			감)14.8	
	녹지 및 기타		864.2	949.9	45.3	49.7									증)85.7
공원 시설율 (법정30%이하)	기정	1,045.6 / 1,909.8 × 100 = 54.7%													
	변경	959.9 / 1,909.8 × 100 = 50.3%												감)5.4%	
공원 건폐율 (법정30%이하)	기정	119.2 / 1,909.8 × 100 = 6.2%													
	변경	125.4 / 1,909.8 × 100 = 6.6%												증)0.4%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부 호	시설명	위치	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구성비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기정	합계			1,909.8	-	3	119.2	119.2	100.0		
변경				1,909.8	-	1	125.4	125.4	100.0		
기정	시설면적 합계			1,045.6	-	3	119.2	119.2	54.7		
변경				959.9	-	1	125.4	125.4	50.3	감)85.7	
도로 및 광장	기정	소계		426.4	-	-	-	-	22.3		
	변경			566.9	-	-	-	-	29.7	증)140.5	
	기정	도로	안동시 송현동 295-3	239.3	-	-	-	-	-		
	변경		안동시 송현동 295-3	361.6	-	-	-	-	-	증)122.3	
	기정	휴게광장	안동시 송현동 295-3	142.9	-	-	-	-	-		
	변경		안동시 송현동 295-3	205.3	-	-	-	-	-	증)62.4	
	기정	진입광장	안동시 송현동 295-3	44.2	-	-	-	-	-		
	폐지		안동시 송현동 295-3	-	-	-	-	-	-	감)44.2	
휴양 시설	기정	소계		97.4	-	-	-	-	5.1		
	변경			89.3	-	-	-	-	4.7	감)8.1	
	기정	휴게쉼터	안동시 송현동 295-3	97.4	-	-	-	-	-		
	폐지		안동시 송현동 295-3	-	-	-	-	-	-	감)97.4	
	신설	2-1	휴게쉼터A	안동시 송현동 295-3	54.1	-	-	-	-	-	증)54.1
	신설	2-2	휴게쉼터B	안동시 송현동 295-3	24.0	-	-	-	-	-	증)24.0
	신설	2-3	휴게쉼터C	안동시 송현동 295-3	11.2	-	-	-	-	-	증)11.2

구분	부 호	시설명	위치	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구성비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유희 시설	기정	소계		363.7	-	-	-	-	19.0	
	변경			79.1	-	-	-	-	4.1	감)284.6
	기정	어린이 놀이터	안동시 송현동 295-3	363.7	-	-	-	-	-	
	변경		안동시 송현동 295-3	79.1	-	-	-	-	-	감)284.6
운동 시설	기정	소계		10.7	-	-	-	-	0.6	
	변경			68.6	-	-	-	-	3.6	증)57.9
	기정	체력단련장	안동시 송현동 295-3	10.7	-	-	-	-	-	
	변경		안동시 송현동 295-3	68.6	-	-	-	-	-	증)57.9
편의 시설	기정	소계		28.2	-	-	-	-	1.5	
	변경			51.6	-	1	21.0	21.0	2.7	증)23.4
	기정	급수전	안동시 송현동 295-3	28.2	-	-	-	-	-	변경없음
	신규	세족장	안동시 송현동 295-3	2.4	-	-	-	-	-	증)2.4
	신규	화장실	안동시 송현동 295-3	21.0	-	1	21.0	21.0	-	증)21.0
관리 시설	기정	소계		119.2	-	3	119.2	119.2	6.2	
	변경			104.4	-	2	104.4	104.4	5.5	감)14.8
	기정	자율방범대 조소	안동시 송현동 295-3	58.9	판넬	1	58.9	58.9	-	변경없음
	기정	급수시설	안동시 송현동 295-3	45.5	판넬	1	45.5	45.5	-	변경없음
	기정	창고	안동시 송현동 295-3	14.8	판넬	1	14.8	14.8	-	
	폐지		안동시 송현동 295-3	-	-	-	-	-	-	감)14.8
녹지 및 기타	기정	녹지	전지역	864.2	-	-	-	-	45.3	
	변경		전지역	949.9	-	-	-	-	49.7	증)85.7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계				106.3	239.3				
변경					150.9	361.6				
폐지	소로	3	1	1.2	5.0	6.1	진입로	부지외부	어린이놀이터	
폐지	소로	3	2	2.9	7.1	18.5	진입로	부지외부	휴게광장	
폐지	소로	3	3	2.0	10.4	17.7	진입로	부지외부	휴게쉼터	
폐지	소로	3	4	2.1	10.1	18.9	진입로	부지외부	휴게쉼터	
폐지	소로	3	5	4.0	31.2	129.2	진입로	부지외부	휴게광장	
폐지	소로	3	6	0.9	7.6	6.7	연결로	휴게광장	어린이놀이터	
폐지	소로	3	7	2.6	34.9	42.2	연결로	소로3-3	소로3-2	
신규	소로	3	1	4.2	7.3	30.3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2	3.8	27.7	105.4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3	4.0	2.1	8.2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4	1.9	21.7	48.4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5	1.2	23.8	28.5	산책로	소로3-2	소로3-4	
신규	소로	3	6	1.5	30.6	44.0	산책로	소로3-4	세족장	
신규	소로	3	7	2.6	2.0	5.2	연결로	소로3-5	어린이놀이터	
신규	소로	3	8	4.6	1	4.6	연결로	소로3-4	어린이놀이터	
신규	소로	3	9	2.5	34.7	87.0	연결로	소로3-3	소로3-1	

2) 기정 : 태화1공원 → 변경 : 송현3공원

가. 공원조성계획(총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230.5	2,230.5	100.0	100.0	1	-	9.7	-	9.7	-			
시설면적 합계			1,317.5	1,095.8	59.1	49.1	1	-	9.7	-	9.7	-			감)221.7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소 계	1,015.5	769.8	45.5	34.5									감)245.7
		도로	210.3	212.5	9.4	9.5									증)2.2
		광 장	805.2	557.3	36.1	25.0									감)247.9
	휴양시설		-	105.8	-	4.8									증)105.8
	유희시설		292.3	73.9	13.1	3.3									감)218.4
	운동시설		-	143.7	-	6.4									증)143.7
	편익시설		9.7	2.6	0.4	0.1	1	-	9.7	-	9.7	-			감)7.1
	녹지 및 기타		913.0	1,134.7	40.9	50.9									증)221.7
공원 시설율 (법정30% 이하)	기 정	1,317.5 / 2,230.5 × 100 = 59.1%													
	변 경	1,095.8 / 2,230.5 × 100 = 48.9%												감)10.2%	
공원 건폐율 (법정30% 이하)	기 정	9.7 / 2,230.5 × 100 = 0.4%													
	폐 지	-												감)0.4%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부 호	시설명	위치	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구성비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기정	합계			2,230.5	-	1	9.7	9.7	100.0		
변경				2,230.5	-	-	-	-	100.0		
기정	시설면적합계			1,317.5	-	1	9.7	9.7	59.1		
변경				1,095.8	-	-	-	-	49.1	감)221.7	
도로 및 광장	기정	소계		1,015.5	-	-	-	-	45.5		
	변경			769.8	-	-	-	-	34.5	감)245.7	
	기정	도로	전지역	210.3	-	-	-	-	-		
	변경			212.5	-	-	-	-	-	증)2.2	
	기정	1-1	광장	안동시 송현동 316-2	580.3	-	-	-	-	-	
	변경	1-1			444.8	-	-	-	-	-	감)135.5
	기정	1-2	진입광장		224.9	-	-	-	-	-	
	변경	1-2			112.5	-	-	-	-	-	감)112.4
휴양 시설	기정	소계		-	-	-	-	-	-		
	변경			105.8	-	-	-	-	4.8	증)105.8	
	신설	2-1	휴게쉼터A	안동시 송현동 316-2	54.1	-	-	-	-	-	증)54.1
	신설	2-2	휴게쉼터B	안동시 송현동 316-2	28.3	-	-	-	-	-	증)28.3
	신설	2-3	휴게쉼터C	안동시 송현동 316-2	12.6	-	-	-	-	-	증)12.6
	신설	2-4	휴게쉼터D	안동시 송현동 316-2	10.8	-	-	-	-	-	증)10.8

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구성비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유희 시설	기정	소계		292.3	-	-	-	-	13.1	
	변경			73.9	-	-	-	-	3.3	감)218.4
	기정	어린이 놀이터	안동시 송현동 316-2	292.3	-	-	-	-	-	
	폐지		안동시 송현동 316-2	-	-	-	-	-	-	감)292.3
	신설	어린이 놀이터	안동시 송현동 316-2	73.9	-	-	-	-	-	증)73.9
운동 시설	기정	소계		-	-	-	-	-	-	
	변경			143.7	-	-	-	-	6.4	증)143.7
	신설	4-1 체력단련장A	안동시 송현동 316-2	89.2	-	-	-	-	-	증)89.2
	신설	4-2 체력단련장B	안동시 송현동 316-2	45.9	-	-	-	-	-	증)45.9
	신설	4-3 지압장	안동시 송현동 316-2	8.6	-	-	-	-	-	증)8.6
편의 시설	기정	소계		9.7	-	1	9.7	9.7	0.4	
	변경			2.6	-	-	-	-	0.1	감)7.1
	기정	화장실	안동시 송현동 316-2	9.7	-	1	9.7	9.7	-	
	폐지			-	-	-	-	-	-	감)9.7
	신설	5-1 세족장	안동시 송현동 316-2	2.6	-	-	-	-	-	증)2.6
녹지 및 기타	기정	녹지	전지역	913.0	-	-	-	-	40.9	
	변경			1,134.7	-	-	-	-	50.9	증)221.7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계				77.8	210.3				
변경					126.3	212.5				
폐지	소로	3	1	1.4	3.5	6.1	진입로	부지외부	진입광장	
폐지	소로	3	2	1.7	2.0	3.4	진입로	부지외부	진입광장	
폐지	소로	3	3	1.5	2.5	3.7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폐지	소로	3	4	1.6	18.6	37.2	진입로	부지외부	소로3-5	
폐지	소로	3	5	3.5	9.2	33.2	진입로	부지외부	소로3-7	
폐지	소로	3	6	4.8	2.5	12.5	연결로	진입광장	소로3-7	
폐지	소로	3	7	3.1	36.5	108.4	연결로	소로3-6	소로3-8	
폐지	소로	3	8	1.9	3.0	5.8	연결로	소로3-7	소로3-5	
신규	소로	3	1	1.5	19.9	26.8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2	1.6	2.4	3.7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3	2.0	2.1	4.2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4	2.4	3.9	9.3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5	3.5	4.2	14.5	진입로	부지외부	소로3-4	
신규	소로	3	6	2.5	10.3	25.6	진입로	부지외부	세죽장	
신규	소로	3	7	1.2	28.6	37.2	산책로	소로3-1	어린이놀이터	
신규	소로	3	8	1.2	25.3	30.3	산책로	소로3-1	어린이놀이터	
신규	소로	3	9	1.7	1.4	2.7	연결로	소로3-1	소로3-1	
신규	소로	3	10	1.7	1.1	2.2	연결로	휴게쉼터C	어린이놀이터	
신규	소로	3	11	1.5	1.3	2.2	연결로	소로3-1	어린이놀이터	
신규	소로	3	12	3.5	2.0	7.6	연결로	광장	휴게쉼터D	
신규	소로	3	13	1.8	20.3	35.6	연결로	진입광장	광장	
신규	소로	3	14	3.0	3.5	10.6	연결로	진입광장	광장	

3) 태화3공원

가. 공원조성계획(총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62.3	2,062.3	100.0	100.0	1	1	29.9	29.9	29.9	29.9			
시설면적 합계			962.8	1,066.5	46.7	51.7									증)103.7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소계	627.7	634.9	30.4	30.8									증)7.2
		도로	182.5	309.8	8.8	15.0									증)127.3
		광장	445.2	325.1	21.6	15.8									감)120.1
	휴양시설		-	56.6	-	2.7									증)56.6
	유희시설		192.3	210.8	9.3	10.2									증)18.5
	운동시설		-	71.5		3.5									증)71.5
	편익시설		142.8	92.7	6.9	4.5	1	1	29.9	29.9	29.9	29.9			감)50.1
	녹지 및 기타			1,099.5	995.8	53.3	48.3								감)103.7
공원 시설율 (법정30% 이하)	기정	962.8 / 2,062.3 × 100 = 46.7%													
	변경	1,066.5 / 2,062.3 × 100 = 51.7%												증)5.0%	
공원 건폐율 (법정30% 이하)	기정	29.9 / 2,062.3 × 100 = 1.4%												변경 없음	
	변경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구성비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기정	합계			2,062.3	-	1	29.9	29.9	100.0		
				2,062.3	-	1	29.9	29.9	100.0		
기정	시설면적합계			962.8	-	-	-	-	46.7		
변경				1,066.5	-	-	-	-	51.7	증)103.7	
도로 및 광장	기정	소계		627.7	-	-	-	-	30.4		
	변경			634.9	-	-	-	-	30.8	증)7.2	
	기정	도로	전지역	182.5	-	-	-	-	-		
	변경			309.8	-	-	-	-	-	증)127.3	
	기정	광장	안동시 태화동 891	445.2	-	-	-	-	-		
	변경			1-1 1-1	325.1	-	-	-	-	-	감)120.1
휴양 시설	기정	소계		-	-	-	-	-	-		
	변경			56.6	-	-	-	-	2.7	증)56.6	
	신설	2-1	휴게쉼터A	안동시 태화동 891	28.3	-	-	-	-	-	증)28.3
	신설	2-2	휴게쉼터B	안동시 태화동 891	28.3	-	-	-	-	-	증)28.3
유흥 시설	기정	소계		192.3	-	-	-	-	9.3		
	변경			210.8	-	-	-	-	10.2	증)18.5	
	기정	어린이놀이터	안동시 태화동 891	192.3	-	-	-	-	-		
	폐지		2-1	안동시 태화동 891	-	-	-	-	-	-	감)192.3
	신설	3-1	어린이놀이터	안동시 태화동 891	198.2	-	-	-	-	-	증)198.2
	신설	3-2	유아놀이터	안동시 태화동 891	12.6						증)12.6
운동 시설	기정	소계		-	-	-	-	-	-		
	변경			71.5	-	-	-	-	3.5	증)71.5	
	신설	4-1	체력단련장	안동시 태화동 891	56.8	-	-	-	-	-	증)56.8
	신설	4-2	지압장	안동시 태화동 891	14.7	-	-	-	-	-	증)14.7

구분	부호	시설명	위치	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구성비 (%)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편의 시설	기정	소계		142.8	-	1	29.9	29.9	6.9		
	변경				92.7	-	1	29.9	29.9	4.5	감)50.1
	기정	3-1	급수대	안동시 태화동 891	95.4	-	-	-	-		
	변경	5-1			41.9	-	-	-	-	감)53.5	
	기정	3-2	급수시설	안동시 태화동 891	47.4	벽돌	1	29.9	29.9	-	변경없음
	신설	5-3	세죽장	안동시 태화동 891	3.4					증)3.4	
녹지 및 기타	기정	녹지	전지역	1,099.5	-	-	-	-	53.3		
	변경				995.8	-	-	-	-	48.3	감)103.7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계				58.7	182.5				
변경					159.2	309.8				
폐지	소로	3	1	3.8	23.0	98.0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폐지	소로	3	2	6.2	3.1	19.0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폐지	소로	3	3	4.2	6.8	27.9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폐지	소로	3	4	1.2	25.8	37.6	산책로	소로3-1	광장	
신규	소로	3	1	4.3	22.6	97.2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2	2.9	2.6	7.6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3	4.0	10.5	41.9	진입로	부지외부	광장	
신규	소로	3	4	1.2	78.0	101.1	산책로	지압장	광장	
신규	소로	3	5	1.4	43.1	58.2	산책로	광장	광장	
신규	소로	3	6	1.6	2.4	3.8	연결로	광장	체력단련장	

4. 공람장소, 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의견제출)장소 : 안동시 공원녹지과(☎054-840-5407)

태화동 행정복지센터(☎054-840-4843)

송하동 행정복지센터(☎054-840-4954)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 공휴일 제외)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상기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청 공원녹지과(☎054-840-54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규 칙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874호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14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마.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 -----.
〈신설〉	가. <u>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u>
가. ~ 다. (생략)	나. ~ 라. (현행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신설〉	마. <u>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u>정보화책임관</u> 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 ----- ----- ----- <u>지능정보화책임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u>정보화책임관</u> 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u>지능정보화책임관</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조(심의 요청) ① <u>정보화책임관</u> 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사업이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의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요청) ① <u>지능정보화책임관</u> -- ----- ----- ----- -----.
② <u>정보화책임관</u> 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u>지능정보화책임관</u> ----- ----- -----.
제8조(심의 결과 통보) ① <u>정보화책임관</u>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 통보) ① <u>지능정보화책임관</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 완료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u>정보화책임관</u> 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완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완료 제출) ----- ----- ----- <u>지능정보화책임관</u> ----- ----- -----.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남부발전(주)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당초)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1필지 (변경)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33필지 일원 면적 : (당초) 1,238㎡ → (변경) 1,447㎡, 일시 593㎡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안동천연가스발전소 공업용수 취수 ○ 변경사유 : 펌프 2대 추가 및 전기케이블 추가 설치 ○ 시설개요 : 집수정 2개소(A=1,238㎡), 펌프 6대(D=0.2m) - 양수관로(D=500mm, L=468m), 제어시설 1개소, - 전기케이블 설치 (80.0m×0.8m) - 기존압입구간 57.78m×0.8m - 관보호공구간 300.708(L)×0.56(B), 47.64(L)×0.79(B)
점 용 기 간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일시) 2025년 07월 09일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4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86-2번지 일원 면적 : (당초) 5㎡, 일시 50㎡ → (변경) 8.13㎡, 일시 91㎡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사업 부대시설 설치 ○ 변경사유 : 부대시설 추가 설치 ○ 시설개요 : - 옥외용 판넬(계측기기 : 수질계 121EA, 수압계 20EA, 밸브 전동조작기 50EA) 1개 - 전선관(D50mm) 3m×2열 - 배수관(D50mm) 5m×1열 - 정류기 2개 - Junction Box 2개 - 보링홀 2개 - 전선관(방식용) 1개
점 용 기 간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409-3번지 외 70필지 일원 면적 : (당초) 6,200.9㎡, 일시 10.2㎡ → (변경) 6,203.54㎡, 일시 54.2㎡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송수관로 매설 ○ 변경사유 : 전기방식 설비 추가 설치 ○ 시설개요 : - 송수관 4.8km - 정류기 1대 - 정션박스 : 4대 - 보링홀 매트 : 4개 - 전선관 : 110m
점 용 기 간	2025년 07월 10일부터 2030년 07월 09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관광정책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635 면적 : 19,00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안동 수페스타 행사 ○ 시설개요 : [행사장 물놀이장·무대 설치] - 메인무대(26560mm(W)×9280mm(D)×8000mm(H)) 1개소 - 무대연출(14560mm(W)×7280mm(D)×1200mm(H)) 1개소 - VIP존(20020mm(w)×6370mm(d)×1000mm(h)) 2개소 - 물놀이장 : 조립식 수영장 4개(20m×15m 3개, 10m×10m 1개) - 워터슬라이드(40000mm(W)×1000mm(D)×6000mm(H)) 1개소 - 튜브슬라이드(55000mm(W)×12000mm(D)×7500mm(H)) 1개소 [천막] - TFS 텐트 쉼터(60000*30000) 1개소 - 5*5MQ 텐트 35동(먹거리/운영부스) - 5*5 MQ 텐트 40동(그늘막/메쉬지붕) - 3*3 MQ 텐트 7동(운영부스) - 6*3 캐노피 텐트 3동(운영부스) [캠핑존] - 총 100여동(대여동-40동*캠퍼동-60동) ※ 별도의 시설물 설치 없음 - 캠핑카존 : 30대 외 [그 외] - 푸드트럭 6개소, 플리마켓 간이매대 4동, 이동식 화장실 3대 - 기타 부대시설
점 용 기 간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5년 08월 08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동창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청도군수(건설과장)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87-8번지 외 22필지 면적 : 10,998㎡, (일시) 491㎡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사지보 재가설 ○ 시설개요 : 사지보 재가설 L=214.7m, H=1.7m
점 용 기 간	2025년 07월 10일부터 2030년 07월 09일까지 (일시)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7년 07월 09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칠곡군수(지역활력과장)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번지 외 9필지 면적 : 7,794㎡, (일시) 6.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낙동강 자전거 펌프트랙 조성공사 ○ 시설개요 : - 배수공 : 1. 집수정(0.4x0.4x0.7~0.9) 11개소, (0.6x0.6x0.5~1.1) 5개소 2. 원형맨홀(Φ600) H=0.8~1.2m 3개소 3. 배수관 (D150~D400) L=239m 4. 관정(상부보호공) 1개소 5. 보차도경계석(C1형~E1형) L=509m 6. 도로경계석 (150x150x1000) L=98m - 구조물공 : 1. 식생옹벽블록(W1,000xL620xH500) H=2.0~2.5m L=61m 2. 정화조(Φ2,000x9,350) 1개소 - 포장공 : 1. 펌프팔트포장 A=1,830㎡ 2. 콘크리트포장 A=1,139㎡ 3. 우레탄포장 A=1,139㎡ 4. 잔디포장 A=1,623㎡ 5. 잔디블록포장 A=332㎡ ※ 투수콘 및 투수가능한 제품 사용 - 부대공 : 1. 접이식 파라솔(4,500x3,500) 2개소 2. 벤치의자 (1670x645x860) 3개소 3. 디자인웬스(W1,500xH1,200) L=241m 4. 관정 메시웬스 및 출입문(W2,000xH1,000~1,500) 4경간 5. 이동식 화장실 (8,600x2,700x3,500) 1개소 6. 자전거대여소 (4,000x2,000x2,100) 1개소 7. 이팝나무 1주
점 용 기 간	2025년 07월 11일부터 2030년 07월 10일까지 (일시) 2025년 07월 11일부터 2026년 01월 10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9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도시디자인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53-1번지 일원 면적 : (당초) 2,114㎡ → (변경) 1,528.3㎡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교량하부 유희공간 휴게공간 조성 ○ 변경사유 : 포장면적 축소 ○ 시설개요 : - 토공 : 블록절단 154.2m, 잔디블럭 걷기 620㎡ 등 - 시설공 : 데크공연장 1식, 데크A~D 6식, 휴게벤치 A(450X2,016) 18개소, 자전거보관대 5EA 등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262㎡, 잔디블럭 재포장 824㎡, 탄성포장 184㎡ 등 - 배수공 : PE이중벽관A(D450) 10.6m, PE이중벽관B(D250) 28.2m, 원형수로관(D300) 112.5m 등 - 부대공 : 관목식재 240주 등
점 용 기 간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